

환급이 전부 아닙니다

2019 연말정산 공제 노하우

해마다 연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추위와 나이, 그리고 연말정산이다. 최근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다보면 자칫 누락되기 쉬운 공제 혜택이 있다. 환급보다 더 중요한 연말정산 공제 노하우를 알아보자.

글_ 최진용(『2019 연말정산 환급교과서』 저자)



연말정산, 2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이란 급여 수준과 가족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내고 매년 2월 소득세를 계산해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며 나중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급여 중 일정액을 미리 세액

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 너무 많이 걷었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그만큼 더 세금을 걷는 게 연말정산의 원리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간 받은 급여와 상여를 모두 합친 소득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한다.

여기서 공제 받을 항목이 있다면 소득공제를 해주고 나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할지 결정된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차액을 계산해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의 경우에는 추징을 받는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는가?” “연말정산은 간소화서비스 자료만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나?” 등의 말을 하는 걸 많이 본다. 물론 회사에서 신고를 해준다. 그러나 신고를 대행해주는 것이지 누락된 게 있는지 확인해주고, 추가로 환급받을 게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환급이 가능한지 근로자에게 절대 물어보지 않는다. 오직 제출된 자료로만 처리할 뿐이다. 근로자는 특히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반드시 추가로 잘 챙겨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연말정산이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환급보다 결정세액이 더 중요한 이유

연말정산에서 만약 20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너무나 기쁜 것이다. 그런데 왜 환급을 받았을까?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하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라는 명목으로 떼어간다. 매월 10만 원씩 소득세를 냈고, 1년을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120만 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런저런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고 나니 실제 내야 할 세금은 12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이 산출된 것이다. 이렇게 세금이 확정된 것을 일컬어 ‘결정세액’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그냥 지나간 것이 있다. 20만 원의 환급을 받았지만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100만 원은 소득세로 빠졌다는 것이다. 환급은 받았지만 세금을 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릴 수도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환급을 금액은 내가 미리 납부했던 소득세에서 결정세액의 차액을 받은 것이지, 그렇다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낸 게 아니란 말이다. 100만 원의 세금을

낸 것이 된다. 그러니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0의 값에 가까운지 살펴야 한다. 결정세액이 9원이라면 정말로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완벽하게 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작년보다 환급액은 늘었지만 결정세액이 증가했다면 어쨌든 작년보다 세금을 더 낸 게 확실하다. 그러므로 연말 정산을 할 때 환급액에 집중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결정세액을 0원에 가깝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그럴 때에 환급액은 자연스럽게 더 늘어나게 된다.

연말정산 공제항목과 본인이 챙겨야 하는 항목

다음의 표는 국세청에서 공개한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다. 이와 함께 소득공제를 위해 본인이 챙겨야 할 항목을 살펴보자.

구분	공제항목
공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보험료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시력보장용 안경 구입비용
교육비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유치원, 초·중·고,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중, 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학생 1명당 50만 원 한도)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담금 납입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 기부금

본인이 챙겨야 하는 항목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월세액공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보청기, 휠체어 등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안경, 렌즈 구입비, 중고생 교복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등 지정기부금

1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 의료비 공제

1. 공제 한도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15%=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나이제한 없음), 난임시술비(한도 없음)
- 그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2.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항목

- 치료목적 아닌 미용, 성형수술, 다이어트 한약 등
- 산후조리원 비용
-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간병비
- 외국에 소재한 대학병원에 지급한 의료비
- 진단서, 소견서 발급 등 서류발급비
- 임신 후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한 경우
-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3. 의료비 공제에 해당 유무가 헷갈리기 쉬운 항목 (모두 공제 가능)

- 건강검진을 위해 병원에 지불한 비용
- 라식 수술비
- 틀니, 임플란트, 치열교정비(저작기능 장애 진단서 첨부), 스케일링
- 불임으로 인한 인공시술을 받은 검사료, 시술비

- 출산분만비
- 치료를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유방재건술, 안검하수 수술 등)

**4. 근로자가 가장 많이 누락하는 공제 내용
세법상 장애인 공제**

소득세법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취업 또는 취학이 불가능한 자'이 한줄 이외에 다른 세부적인 기준을 말하지 않는다. 중증환자는 암 같은 4대 중증질환을 의미할까? 온전히 주치의 본인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한다. 주치의 판단에 따라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도 있고 발급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주치의에게 꼭 물어봐야 한다.

안경 및 의료기기 구입비 공제

의사 처방을 통해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나 의료보조기구를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자동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되지 않는다. 구매한 곳에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비 납입증명서에 어떤 의료기기를 구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기기는 본인이 개인적인 필요로 구매했을 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비장애인은 보청기와 시력교정용 안경 구입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에 포함된다.





2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 교육비 공제

1. 공제 한도

-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불한 교육비에 대해서 15% 세액공제 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요건이 충족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전액 공제
- 직계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님

2. 공제 범위

• 취학 전 아동(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지불한 본인부담금(보육료 납입 증명서 제출), 국내학원(태권도, 피아노, 발레, 영어학원 등 1주 1회 이상 실시되는 수업에 참여할 경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카드로 결제할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학원에 요청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혹시 학원의 폐업 등 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결제내용을 증빙할 서류와 학원 폐업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한다. 사업자 폐업 여부는 온라인 홈텍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초·중·고등학생(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학원수업료 및 방과 후 수업료, 교복 및 체육복,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및 도서구입비, 학교에서 지급한 급식비, 국외 교육비(초, 중학생 제외, 정규 교육과정만 해당)

취학한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를 지출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을 수 있

으나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교 수시 입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회사에 추가 제출해야 한다.

• 대학생(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기숙사비 제외), 국외교육비(정규 대학과정만 해당, 어학연수 등 제외), 대학원은 근로자 본인에 한함

학자금대출을 받아서 납부한 대학 등록금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학자금대출 상환액에 대해서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다. 남편이나 아내의 동생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라면 해당 가족이 납부한 대학등록금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 근로자 본인

대학교 등록금(사이버대학 포함),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훈련비 수강료(교육비납입증명서 제출)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경우, 최소 수십만원에서 1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공제를 많이 받는 연도의 경우, 부양가족을 다른 가족에게 포함시킨다든지 세액공제 받는 금융상품 납입을 중지해야 하는 게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한다.

• 장애인 특수교육비

나이, 소득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 장애인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비용 공제 가능,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료 공제대상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

3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 부양가족 공제

1. 공제 한도

- 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단, 장애인은 나이요건에 해당 없이 공제 가능)
- 소득요건 : 근로소득 금액 연간 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연간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소득공제

2.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시 가족은 어디까지 적용되나?

- 부양가족공제 가능 범위 : 부모,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장인·장모, 남편
의 형제·자매, 아내의 형제·자매
- 부양가족공제 해당 안 되는 가족 : 배우자의 외조부모,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부모의 형제·자매

4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 부녀자 공제

연말정산에서 유일하게 여성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부녀자공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대상자는 아래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근로소득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연봉 약 4,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2)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 또는 미혼, 이혼 등으로 인해 배우자가 없으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 공제 한도 : 50만 원

2. 주의사항

- 부녀자공제는 한부모가족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할 경우 공제금액이 더 큰 한 부모가족공제를 적용받는 게 좋다(한부모가족공제액 100만 원).



또한,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시에 부녀자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소득금액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담당자에게 꼭 통보하고 추가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누락되지 않는다.

5 연말정산 이것이 궁금하다 : 종교단체 기부금

1. 공제 한도

- 공제대상금액 : 총 급여의 10%
- 세액공제액 : 15%

2.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항목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금 확인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해당 종교단체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되지 않거나 종교단체로 인정되지 않는 종교는 제외된다.

3.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

소속증명서, 기부금 영수증



배먹기 쉬운 공제 항목

TIP



1)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공제

공제 한도 : 도서구입비용과 공연관람비에 지출한 금액의 30%, 최대 100만 원 한도(사용액 아닌 공제액 기준)

공제 조건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에 한해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 사용한 도서구입비용과 공연관람비용에 지출했을 경우.

예) 도서구입 100만 원+ 공연관람비 100만 원=200만 원
200만 원×30%=60만 원(1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 공제)

주의사항 :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에서 구매하는 도서와 공연 티켓에 한함. 도서와 문구가 결합된 도서 상품은 국제표준도서번호(ISSN)가 부착된 완전한 결합상품인 경우만 소득 공제 대상
※ 공제 불가사항 : 도서 대여비, 영화 관람비, 카드 포인트로 결제한 도서 및 공연관람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구매한 도서 및 공연 관람비, 잡지 및 정기간행물

2) 중고차 구입비 공제

공제 한도 : 차량가액의 10% 소득공제, 신용카드 구매 시 15% 공제를 적용,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 시 30% 공제를 적용

공제 조건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한도는 카드공제금액에 합산

공제 범위 : 중고차 중고수수료 공제 가능. 출고 전 검사비, 경정비 관련비용 공제불가. 취득세, 공채, 인지도 등 세금 및 신고서류 비용 공제불가

3) 학자금대출원리금상환액 공제

공제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15%

공제 조건 :

-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시
-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 학자금 대출 직접 상환 시
 - 근로자 본인 : 전액 공제
 - 영유아~고등학생 : 연 300만 원
 - 대학생 : 연 900만 원
 -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

4) 중소기업취업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공제 한도 및 공제 조건

• **공통**

3년 간 근로소득세 70% 감면, 최대 150만 원 한도
중소기업에 다니던 여성근로자가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뒤 퇴직한 날로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에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공제 대상

• **70% 감면비율 적용 대상자**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50% 감면비율 적용 대상자**

2014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 대상자**

2013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

주의사항

같은 회사에 취업할 경우만 해당. 퇴직한 뒤 다른 회사에 취업했다면 나머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5) 자녀체험학습비 공제

공제 한도 : 교육비 세액공제 15%(1인당 30만 원 한도)

공제 조건 :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

※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중 체험학습비 공제와 교복구입비용을 합산해 1인 50만 원 한도로 공제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교복구입비는 1인 한도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1인 30만 원 한도로 전체 교육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공제 가능하다.

